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정식 서명 · 교환

2004. 6. 5

- o 2004년 6월 3일부터 5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중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가 상호 교환됨으로써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의 정식 서명절차가 완료
- o 이번에 남과 북이 정식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는 쌍방이 발효에 필요한 내부절차를 거쳐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 국회동의절차 등을 거치면 곧 발효될 것으로 예상
- o 남과 북사이의 안정적 해상운송체계를 마련하고 해운분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년 9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부터 논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4차례의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을 통하여 남북해운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고 이번에 정식 서명 · 교환하게 된 것
- o 남북해운합의서에는 남북간 해상항로를 민족내부항로로 규정하고 남북각각 7개 항구간 항로를 개설하며, 항만내에서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 선박에 부여하고 해양사고시 상호협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
- o 남북해운합의서가 발효되면 지금까지 제3국적선에 의존하던 남북교역물자를 남북의 국적선이 직접 운송할 수 있게 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상운송 제도가 마련되어 남북교역의 활성화는 물론 남북한 해운항만분야 협력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붙임 :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정식 서명·교환 해설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정식
서명 · 교환 해설

2004. 6. 5

통 일 부

1. 남북해운합의서 추진경과

- o 2001.6.2-6.5 북한상선 3척 제주해협 무단 통과, 남북간 해운협력문제가 남북간 쟁점으로 등장
 - * 2001.6.4 우리측은 통일부장관 명의 대북전통문을 통해 해운합의서 체결을 위한 해운회담의 필요성 제기
- o 2001.9.15-9.18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민간선박의 상호 영해 통과 허용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해운실무접촉 합의
- o 2002.10.19-10.22 제8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해운합의서 채택을 위한 해운실무접촉 합의
- o 2002.11.18-11.20 제1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
- o 2002.12.25-12.28 제2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 남북해운합의서 가서명
- o 2003.10.11-10.12 제3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
- o 2004.2.25-2.26 제4차 남북해운협력 실무접촉 개최, 남북해운부속합의서 주요 쟁점사항 타결
- o 2004.5.28 남북해운부속합의서 가서명
- o 2004.6.2-6.5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9차 회의시 남북장관급회담 수석대표가 정식 서명한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교환

2. 남북해운합의서 주요내용

□ 남북 해상운송

-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운항 보장

□ 항로개설

- 해상항로는 나라와 나라가 아닌 민족내부 항로로 인정
-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 개설

□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 항만내에서 자기측 선박과 동등한 대우 부여
 -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선석배정, 화물 하역 등

□ 행정증서의 상호 인정

-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 상호인정

□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발생시 긴급피난 보장
-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 또는 해양오염방제 실시

□ 선원 및 여객의 상륙

-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 가능
-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

□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 선박운항 정보교환을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 구성
- 항만시설의 개선,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 및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협의기구 구성·운영

□ 통신

- 전화 및 모사전송을 포함한 유선통신망 확보

3. 남북해운합의서 기대효과

□ 남북한간 안정적인 수송 실현

- 해상항로 개설 및 해상항로대 지정
- 남·북간 해양사고에 대한 구조체계 확립
-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 보장
- 선박운항 정보교환을 위한 통신망 구축

□ 해운항만산업의 상호 발전

-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와 협력 촉진
- 항만시설의 개선, 해상운송 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

□ 연안해운 활성화 및 교역 확대

- 제3국적선이 수송하던 물자를 남·북한 국적선이 직접수송
- 연간 30억 이상의 용선료 해외유출 방지
- 물류비 절감에 따른 교역 확대

□ 남북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

- 상호 교류확대를 통해 공감대 형성
- 해운항만산업의 공동발전으로 통일기반 조성

4. 남북간 선박운행 및 물동량 현황

□ 남북간 선박운행현황

- 현재 남북간 선박운행은 3개 항로의 정기선과 수산물 교역, 쌀, 비료 등 인도지원물자 운송 부정기선으로 운행
 - 쌀, 비료 지원물자 운송 등 일부사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제3 국적선을 용선 운행
 - 2003년도의 경우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기준 2,022회, 해상물동량은 1,048,383톤

【연도별 남북한간 선박운항 횟수】

(단위: 회)

구 분	'94. 7-12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남한→북한	27	99	101	113	260	731	916	766	798	877	4,688
북한→남한	70	208	221	244	342	983	1,157	920	1,029	1,145	6,319
계	97	307	322	357	602	1,714	2,073	1,686	1,827	2,022	11,007

【연도별 남북한간 선박 물동량 현황】

(단위: 톤)

구 분	'94. 7-12	'95	'96	'97	'98	'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남한→북한	6,758	281,220	147,888	361,282	396,111	780,593	547,262	402,271	899,219	841,215	4,663,815
북한→남한	131,136	345,778	187,610	249,750	162,220	203,019	155,883	239,332	156,623	207,168	2,038,528
계	137,894	626,998	335,498	611,041	558,331	983,612	703,145	641,503	1,055,842	1,048,383	6,702,247

□ 남북간 정기항로현황

선박명(선사명)	항 로	운행목적	운행횟수
CHU XING(동용해운)	부산-나진	남북교역물자 운송	월 4회
TRADE FORTUNE(국양해운)	인천-남포	남북교역물자 운송	월 4회
한겨레호(대아고속해운)	속초-양화	경수로 건설인력 운송	월 2회

* 한겨레호를 제외하고 CHU XING호는 중국, TRADE FORTUNE호는 파나마 국적선

남북해운합의서

남과 북은 2000년 6월 15일에 발표된 역사적인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진행되는 경제교류와 협력이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우리 민족내부의 사업이라고 인정하면서 남과 북사이의 해상운송 및 항만분야의 발전과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1. 이 합의서에서 ‘선박’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가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운영하는 상선을 말하며, 다음 선박은 포함되지 않는다.
 - 가. 어선(어획물 운반선 제외)
 - 나. 군전용 선박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
2. 이 합의서에서 ‘선원’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신분증명서를 소지하고 당해 선박의 선원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이 합의서에서 ‘여객’이라 함은 선박에 승선한 선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4. 이 합의서에서 ‘해사당국’이라 함은 남과 북의 해사업무를 관장하는 권한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항구간을

직접 운항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북 해상운송

1.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해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상대측 선박에 대한 통관수속 등 관련절차를 신속하고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3. 남과 북은 선박들이 쌍방 해역을 운항하면서 통행분리체계를 준수하며, 항행경보를 받아 그 요구를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측 당국에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선박들의 상대측 항구에로의 입항시 상대측 항구의 입항질서에 준하며 상대측 항관례와 안내에 따른다.

제4조 항로개설

1.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의 항로로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여객 및 물자를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하여 남측의 인천·군산·여수·부산·울산·포항·속초항과 북측의 남포·해주·고성·원산·홍남·청진·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설한다.

3. 남과 북은 자기측의 선박이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아니한 상대 측의 항만에 기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남과 북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항하기 위하여 해상항로를 보장하고, 해상항로대를 지정·운영하며, 항행경보를 비롯한 해상정보를 상호 통보한다.

제5조 운항선박에 대한 대우

1.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 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2. 제1항에 관한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용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제6조 행정증서의 상호인정

1.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증명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2.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톤수증서를 비치한 선박에 대해서는 자기측 항만에서 재측정하지 않으며, 톤수를 기준으로 선박에 부과되는 모든 비용은 이 톤수증서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다.

제7조 해양사고시 등의 상호 협력

1. 남과 북은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명 및 재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2. 남과 북은 제1항의 경우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를 실시한다.
3. 남과 북은 해양사고를 당한 상대측 선박이 적재한 화물을 자기측의 육상에 임시로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시설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설사용료는 면제한다.

제8조 선원 및 여객의 상륙 관련 문제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상대측 선원 및 여객에 대하여 상륙을 불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3. 남과 북은 긴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선원 및 여객이 있는 경우, 이에 필요한 기간동안 자기측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남과 북은 제3항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선박의 선원교체가 필

요한 경우에는 새로이 승선하는 선원이 당해 선박에 신속히 승선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9조 선박의 통신

1.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내에 개정하도록 한다.

2. 남과 북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 선박 및 쌍방 당국간에 신속하고 원활한 통신을 할 수 있는 긴급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10조 해운용역 수익금의 송금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용역 수익금을 국제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11조 정보교환 및 기술교류

1. 남과 북은 제3조 제1항, 제7조 제2항 및 제8조 제1항 등에 규정된 사항을 상대측에 통보하고 해상 기상정보 등 선박운항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하여 해사당국간에 통신망을 구성·운영한다.

- 남과 북은 쌍방의 항만시설 개선, 기타 해상운송분야의 발전을 위한 기술협력을 진행한다.

제12조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의 준용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사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제13조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운영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도록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 상사분쟁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면 그에 따른다.
-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해결한다.

제15조 효력발생 및 수정·보충

- 이 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합의서는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서를 수정·보충할 수 있다. 수정·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3. 이 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부속합의서를 채택하여 적용한다.

2004년 5월 28일

남 측 을 대 표 하 여	북 측 을 대 표 하 여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북 남 상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 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통 일 부 장 관 정 세 현	내 각 책 임 참 사 권 호 웅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 측

해상운송
해상운송회사
임차
어획물
소지
해사당국
통관
해역
항행경보
하역
용역
해양사고
전복
보호조치
방제
구조·구난
무사귀환
대리점
관행
준용
교류·협력

북 측

해상수송
해상운수기관
용선
물고기
소유
해운당국
통과
수역
항해경보
상하선
봉사
해상재난
침몰
구원조치
제거
구조
안전송환
대리인
관례
적용
협력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남북간 선박운항 허가

1.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전까지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 (선원명부, 적재화물, 여객명부는 부록 제출)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밝혀 상대측 해사당국에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가. 해상운송회사 명칭 및 대표자 이름
- 나. 선명, 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선원명부
- 다. 적재화물(종류 및 중량) 또는 여객명부
- 라. 운항 목적
- 마. 출발·기항·도착항 및 예정일시

2. 남과 북은 출항예정 1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운항허가 사실을 통보하며, 허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이유를 밝혀 통지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항허가 신청과 운항허가서 발급 등 상호 통보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은 출항후 상대측 항구에 입항하기 전에 해당

항만의 관련규정에 따라 선박의 현재 위치 및 입항예정시간 등을 상대측 항만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남과 북은 남북간 동일항로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운항허가를 할 수 있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해상항로가 개설되지 않은 항구에 입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자기측 항구 출항예정 7일전까지 상대측 해사당국에 부록 제1호 양식의 선박운항허가신청서에 따라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남과 북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출항예정 2일전까지 운항허가 신청자에게 부록 제2호 양식의 선박운항 허가서를 발급하고 상대측 해사당국에 그 결과를 통보한다.
8.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를 이용할 경우에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9. 남과 북은 제2항, 제5항, 제7항 및 제8항에 의해 허가, 통보된 선박이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 등에 해를 끼칠 상당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에 운항을 취소,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와 상대측 해사당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의 해상운송회사는 운항일시 등 선박운항신청, 허가 및 통보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조 해상항로대 지정 및 항행

1.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해상항로대를 따라 항행하여야 한다. 다만, 쌍방 해사당국간 별도의 합의가 있거나 민간의 합의를 쌍방 해사당국이 인정한 경우에는 단축항로 등 별도의 해상항로대를 이용할 수 있다.
2. 별표 1의 해상항로대의 추가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정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시 이 부속합의서와 상대측 관계규정 및 운항질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상대측 해역내 해상 항로대로 항행중 선박안전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해상항로대를 벗어나야 할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고 육지로부터 원거리로 이탈하여 항행하여야 하며, 이탈 이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최단거리로 해상항로대에 복귀하여야 한다.
4.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내에서 운항중인 상대측 선박에 초단파 무선전화(VHF),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 또는 항행통보를 통하여 해상 안전정보를 제공한다.
5.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 호출시 즉시 응답하여야 하며,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요청시 선명, 선적, 호출 부호, 총톤수, 현재위치, 입·출항지, 적재화물 등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6.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다음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 가. 군사활동
 - 나. 잠수항행
 - 다.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 라.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및 선전선동
 - 마. 상대측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적하 또는 사람의 승·하선
 - 바. 상대측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 사. 어로
 - 아. 조사 또는 촬영, 측량
 - 자. 상대측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 차. 기타 항행과 직접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7.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하는 동안 정지 또는 정박 할 수 없다. 다만, 긴급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와 기관고장수리, 기상 악화로 인한 피항 등을 위해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8.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제6항의 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검색하여 위반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9. 남과 북은 이 합의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해당 선박에 대하여 주의환기 및 시정조치와 관할해역 밖으로 나가도록 할 수 있으며, 해당 선박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이 합의서 위반사실 및 제기된 내용을 상대측에 통보한다. 통보를 받은 해사당국은 해당 선박에 대해 제기된 내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11. 선박의 위반행위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사후처리, 재발방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쌍방 해사당국이 협의하여 해결한다.
 12. 제1항의 규정은 현재 남북간 운항중인 인천-남포간, 부산-

나진간, 속초-고성간을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및 해주항을 입·출항하는 남측 선박들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제3조 항만 입·출항 및 운항선박 대우

1. 남과 북의 선박은 출입해역의 주변상태, 기상 및 해상상태, 수심, 위험물 등 항행조건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입·출항하여야 한다.
2. 남과 북의 선박이 항계안으로 입항하는 경우에는 입항후 지체없이, 항계밖으로 출항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출항전에 관할 항만당국에 입·출항 신고를 하여야 한다.
3.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항계안에서는 쌍방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제3국적선은 제외한다.
4. 남과 북의 선박중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출항시 도선사를 승선시켜야 한다.
5.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의 항비 계산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계산기준을 적용한다.
6. 남과 북은 상대측 선박에 대한 선석 배정과 항만시설의 사용 등에 있어서 자기측 선박과 동일한 대우를 보장한다.

제4조 해양사고시 협력

1.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의 해역에서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가장 가까운 구조책임기관에 다음의 내용을 통보하고 피난 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측 안내에 따를 수 있다.
 - 가. 선박명 및 호출부호
 - 나. 총톤수 및 선박의 길이, 너비

- 다. 선장의 이름과 선원 수
 - 라. 현재위치(위도 및 경도)
 - 마. 피난이유 및 요구하는 피난항
 - 바. 적재중인 위험화물(종류와 수량)
2.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상대측 선박에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한 경우와 자기측 해역에서 발생된 해양사고로 인한 영향이 상대측 해역에 미칠 우려가 있거나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위하여 남과 북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 제3호 양식의 해양사고통보서를 작성하여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히 통보한다.
 3. 남과 북은 상대측으로부터 공동대응의 요청을 받은 경우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이하 ‘구조대’라 한다.)의 규모를 협의하여 정하고 구조대의 편성내용을 상호 통보한다.
 4. 상대측 해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구조대는 해당 해역을 관할하는 구조책임기관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고 무기가 탑재되어 있는 경우 상대측 해역에 들어가기 전에 이를 봉인하여야 한다. 공동구조 등이 완료되면 자기측 해역으로 신속히 복귀한다. 남과 북은 상대측 구조대의 활동 및 신변안전,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5. 상대측 선박에 대한 구조활동 중 발생한 비용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무상으로 하며, 구조한 사람 또는 선박은 현장에서 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신속히 상대측에 인도한다.
 6. 남과 북은 자기측 해역에서 긴급한 구조가 요구되지 않는 선박의 예인, 인양 및 제거 등의 구난작업 또는 방제작업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 및 장비가 제2항, 제3항,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자기측 해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장하며, 구난 또는 방제작업자는 상대측 관계기관의 통제에 따라야 한다.
 7. 남과 북은 자기측 선박의 해양오염사고로 인한 해양오염방제 활동과정에 상대측의 소요된 비용을 상대측에 지불하여야 한다.

제5조 통신

1. 남과 북은 남북해운합의서 및 이 부속합의서의 이행 및 준수를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에 전화 및 모사전송을 포함한 유선통신망을 확보한다. 이를 위해 이 합의서 발효 후 1개월 이내에 2회선(전화 1회선, 모사전송 1회선)을 설치·운영하고, 후에 증설이 필요한 경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2. 남과 북은 선박운항과 관련한 일반통신 및 해양사고 또는 긴급 환자 발생통보를 위한 긴급통신을 보장하기 위해 항로가 개설된 항만의 항무통신을 항상 유지하고 운영한다.
3.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 할 수 있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 통신을 빠른 시일 내에 보장한다.
4. 남과 북이 공동으로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를 하는 경우 작업의 원활한 수행 및 작업안전을 위하여 남과 북의 구조·구난 또는 해양오염방제기관간에 공통된 통신수단을 보장한다.

제6조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구성 및 운영

1.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이하 '협의기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 가. 협의기구는 쌍방에서 각각 수석대표 1명, 대표 4명으로 구성하고 수행원은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 나. 수석대표는 국장급으로 하며, 대표의 급은 각기 편리한대로 한다.
 - 다. 수석대표 및 대표를 교체할 경우 사전에 상대측에 통보한다.
2. 협의기구는 해운 및 항만 관련 분야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

하고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대책을 협의·이행하고 필요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한다.

3. 협의기구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 가.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나. 회의는 서울 또는 평양이나 쌍방이 합의하는 장소에서 개최한다.
 - 다. 회의는 쌍방의 수석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 라.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합의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 마. 회의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필요한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 바. 회의를 위하여 상대측 지역을 왕래하는 인원들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 편의제공과 회의기록 등 실무절차는 관례대로 한다
 - 사. 협의기구의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회의에서 쌍방이 협의하여 정한다.
4. 협의기구에서 채택하는 합의서는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여 교환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중요한 합의서는 남북장관급회담 쌍방 수석대표가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 효력 및 수정 · 보충

1. 이 부속합의서는 남과 북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남북해운합의서' 제4조 제2항에 지정된 자기측 항구간을 항행하는 도중에 상대측 해역을 통과하는 항로 이용의 시행시기는 차후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에서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2. 이 부속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 보충할 수 있다.
수정 · 보충되는 조항은 제1항의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2004년 5월 28일

남 측 을 대 표 하 여	북 측 을 대 표 하 여
남 북 장 관 급 회 담	북 남 상 급 회 담
남 측 대 표 단 수석 대 표	북 측 대 표 단 단 장
대 한 민 국	조 선 민 주 주 의 인 민 공 화 국
통 일 부 장 관 정 세 현	내 각 책 임 참 사 권 호 웅

【 부록 제1호 양식 】

선박운항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신 청 인	회 사(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대 표 자 성 명		
선명(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운 항 목 적			
운 항 기 간			
출발 · 기항 · 도착항 예 정 일 시			
운 항 구 분	정 기	부 정 기	회
미개설항 입항 이유	※ 미개설항 입항 신청시만 작성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 제1항 및 부속합의서 제1조 제1항, 제5항, 제6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운항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해운상 귀하			

【 부록 제2호 양식 】

선박운항허가서

		접수번호		
회사(명칭)			운행승인번호	
주 소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대표자 성명				
선명(선적, 선박종류, 선박총톤수, 호출부호)				
운항노선				
운항목적				
운항허가 유효기간				
운항구분	정기		부정기	회
남북해운합의서 제3조 제1항 및 부속합의서 제1조 제2항, 제5항, 제7항, 제8항의 규정 에 의하여 위와 같이 선박운항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대한민국 통일부장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육해운상				

【 부록 제3호 양식 】

20 년 월 일

해양사고통보서

보고자 :

사고명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사고원인)	
피해상황	<input type="radio"/> 인명 : <input type="radio"/> 선박 : <input type="radio"/> 화물 : <input type="radio"/> 오염 : <input type="radio"/> 기타 :
조치사항	
협조사항	

【 별표 1 】

해상항로대

1. 외곽항로대

가. 외곽항로대 참조점

번호	참조점	번호	참조점
①	41-29-00N, 130-14-00E	⑦	35-02-00N, 129-22-00E
②	40-00-00N, 130-10-00E	⑧	34-19-00N, 128-58-00E
③	37-10-00N, 130-00-00E	⑨	33-55-00N, 128-25-30E
③-1	38-23-00N, 129-05-00E	⑩	32-42-00N, 126-41-00E
③-2	38-57-00N, 128-40-00E	⑪	32-42-00N, 126-00-00E
③-3	39-13-00N, 128-28-00E	⑫	34-00-00N, 124-41-00E
③-4	39-36-00N, 128-54-00E	⑬	36-00-00N, 124-25-00E
④	36-08-00N, 130-00-00E	⑭	36-48-00N, 124-19-00E
⑤	35-29-00N, 130-00-00E	⑮	38-03-10N, 123-57-00E
⑥	35-13-00N, 129-40-00E	?	38-43-00N, 125-00-00E

나. 외곽항로대 폭은 각 참조점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선을 기준으로 좌우 2.5마일씩 5마일로 한다.

2. 입·출항 항로대

가. 개설항 항구별 항로대

개설항구	항로대
나진항	참조점 ①과 42-07-15N, 130-15-24E점을 연결한 선
청진항	참조점 ①과 41-41-00N, 130-04-00E점을 연결한 선
홍남항	참조점 ③-3와 39-46-15N, 127-39-00E점을 연결한 선
원산항	참조점 ③-3과 39-15-00N, 127-52-20E점을 연결한 선
고성항	참조점 ③-2와 38-47-30N, 128-14-00E점을 연결한 선
속초항	참조점 ③-1과 38-11-25N, 128-37-22E점을 연결한 선
포항항	참조점 ④와 36-08-00N, 129-33-00E 및 36-04-17N, 129-28-52E점을 연결한 선
울산항	참조점 ⑥과 35-24-16N, 129-24-52E점을 연결한 선
부산항	참조점 ⑦과 35-04-11N, 129-08-47E점을 연결한 선
여수항	참조점 ⑨와 34-40-51N, 127-55-42E점을 연결한 선
군산항	참조점 ⑬과 35-56-56N, 126-25-53E점을 연결한 선
인천항	참조점 ⑭와 36-53-54N, 125-48-00E점과 37-04-40N, 126-16-05E점을 연결한 선
남포항	참조점 ?과 38-43-06N, 125-00-24E점을 연결한 선

나. 입·출항 항로대 폭은 개설항 항구별 항로대를 기준으로 좌우

0.5마일씩 1마일로 한다.

3. 남측 해역에서 속초항, 고성항, 원산항 또는 홍남항을 입·출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③과 각 참조점 ③-1, ③-2 또는 ③-3점을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고, 나진 또는 청진항을 출항하여 속초항에 입항하거나 속초항을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②와 ③-1을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며, 나진 또는 청진항에서 출항하여 고성 또는 원산항에 입항하거나, 고성 또는 원산항에서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②와 각 입·출항 항로대의 경위도로 표시된 좌표를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하며, 홍남항에서 출항하여 나진 또는 청진항에 입항하거나 나진 또는 청진항을 출항하여 홍남항에 입항하는 선박은 참조점 ③-4, ②, ①과 각 입·출항 항로대의 경위도로 표시된 좌표를 연결하는 선을 이용하여 통항한다.
4. 입·출항시 항계내 통항은 해도상에 표시된 수로를 이용하여 통航 한다.
5. 항로대 좌표는 세계축지계(WGS-84)를 기준으로 한다.

부 록

쌍방의 합의서에서 다음의 용어는 같은 의미를 지닌다.

남측	북측
해상운송회사	해상운수기관
해역	수역
근무일	로동일
다음의 사항을	아래의 조항을
해사당국	해운당국
다만	그러나
일시	날자, 시간
상호	호상
명시하여	담아
원거리	먼거리
항행통보	항행경보
무기부품	무기부분품
양·적하	양도, 상하선
훼손	피해
기상 악화	일기 불량
검색	검열
사후처리	차후처리
항계	항경계선
도선사	수로안내원
항비	항만비
선석 배정	배자리 선정
피난	대피
해양사고	해상사고
구조·구난	구조
방제	방지
대응	대책
탑재	적선
구난	구조
소요	소비

남북 해상 항로대

